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
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법령의 명칭과 약칭을 사용하고, 인용법령의 명칭변경 및 띄어쓰기를 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법령의 명칭과 약칭의 사용(안 제4조)

－ 영 →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
－ 법 →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
“법”이라 한다)

-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13조)
 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
- 인용법령 제목 띄어쓰기(안 제2조 및 안 제13조)
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→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
 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→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 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호선 → 선출
 - 개의 → 개의(開議)
 - 없는 한 → 없으면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령의 명칭과 약칭을 사용하고, 인용법령의 명칭변경 및 띄어쓰기를 하였으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